



관련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가 확대시행되어 대상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시대상 사업장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업자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확대 대상자 준수사항

1. 판매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2.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국내산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쇠고기, 돼지고기 <small>(가공육, 양념육, 소시지류, 베이컨류,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님)</small>

확대시행 일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수입산 축산물은 기시행 중입니다.)

제도관련 문의

국내산	수입산
www.mtrace.go.kr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1577-2633 국내산 축산물 이력지원실	www.meatwach.go.kr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1688-0026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콜센터



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

상품 판매·제공 시부터
소진 시까지

* 공급받은 일자 기준 7일 이내에는
모든 상품 게시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게시 또는 표시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

표시기한

아래 보기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게시

- ①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 ②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 ③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 ⑤ 별도 게시판 또는 팸말
- ⑥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 ⑦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표시방법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표시문구 예시

- ▶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
- ▶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주의사항

위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기타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 ① 계산대
- ② 출입문 주변
- ③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위 보기 중 **한 곳 이상** 게시

영업자가 공급받은 축산물을
모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

▶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 **이력번호 게시 대체 가능**

* 학교명이 포함된 곳 만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

말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

▶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 2번 이상)으로 설명

※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축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기존 직불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

1588-8112